

第19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9月2日(水) 17時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2종로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

審査된案件

1.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지급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面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面
3.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面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面
5. '92종로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5面

(17時00分 開議)

○委員長 金成贊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法 第55條 規定에 의하여 재적위원 12名 중 출석위원 9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9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行政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議案係長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主任 洪時哲 議案係에 근무하는 洪時哲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第19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行政委員會 開會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開會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2년 7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92년 7월 2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 8월 1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議長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 8월 12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議長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 8월 2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2년도 종로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이상 5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時03分)

○委員長 金成贊 議事日程 第1項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上程합니다.

保健指導課長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相殷 시민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委員님!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종로구 보건소 지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88年度 5월 1일 규칙 제38호에 의하여 저소득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 분만과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의료보험법 第7條 2項,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건사회부 고시 第88-69호, 88年 11월 10日字에 의하여 89年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어 의료보호법, 제4353호 1991年 3월 8日字로 第8條 1項 7號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1992. 7. .

제 출 자: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제88-69호, 88.11.10)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법 제4353호, 1991.3.8)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험 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 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1988. 5.1, 규칙 제38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

3. 관련법규

○의료보험법 제7조

· 제7조(당연적용피보험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이하 “당연적용피보험자”라 한다)가 된다.

②주민의 소득수준, 의료시설의 분포상황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된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제4조(당연적용피보험자) ③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개정 88.7.22)

○보건사회부고시 제88-69호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

의료보험법 제7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의료보험 적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년 11월 10일

보건사회부장관

(가)대상지역: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전국의 모든 시

(나)급여개시시기:1989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 제8조 제1항

제8조(보호의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 찰
2.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 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 만

4. 폐지조례안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金成贊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朴雲植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88-69호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 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종로구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또한 의료보험법이 1991년 3월 8일 전문 개정되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그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 오던 동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운식

1. 제안일자 및 제출자

- 제안일자: 1992년 7월 1일
- 제출자: 종로구청장(보건소)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1992년 7월 24일
- 상정일자: 1992년 9월 2일

[제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3. 검토의견

-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88-69호 (1988.11.10)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

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 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종로구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험법이 1991년 3월 8일 전문 개정되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그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 오던 동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여야 함이 타당함.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洪承台委員! 말씀하세요.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들에게 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대한 수용 대상 인원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운영실적 관계는 1년에 대충 몇 명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相殷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지급 실적으로서 88년부터 91년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에 목표가 8건에 8건을 다 마쳤습니다. 건당 4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8건을 하여 37만1,200원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89년에는 8건을 하여 건당 4만6,700원입니다. 8건에 대하여 37만3,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년에는 8건 목표에 실적은 4건을 하였습니다. 건당 4만6,650원인데 4건을 하여 18만6,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8건 목표에 3건을 하여 건당 4만6,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건으로 3건

총액이 14만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洪承台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중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時11分)

○委員長 金成贊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程합니다.

保健行政課長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閔載植 시민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만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면제 대상자가 추가되어 1항에서부터 7가지 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응급환자의 진료, 전염병환자 발생시의 진료, 그 다음에 방문 진료,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진료, 무의탁자의 진료, 시의 각종 행사시의 의료진료,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7개 항을 삽입하여 수가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에 일률적으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委員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1992.8. .

제 출 자:종로구청장

1. 개정사유

○보건소법(법률 제4353호, 1991.3.8)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10.10)의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기준 마련

2. 주요골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 접종
3.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진료 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의료 사업(안 제3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

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 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 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 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4. 신,구조문대비표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의료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제8조
제 3 조 (수수료의 면제)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1종보호대상자)및 녹색(2종보호대상자), 청색(의료부조대상자)의료보호수첩소지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3 조 (수수료의 면제)①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신 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 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 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 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朴雲植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개정 및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및 제3조의 법적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게만 해당되어 실질상 근거규정 없이 그동안 면제 운영되어 온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저소득층의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국가, 공공단체의 의료지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운식

1. 제안일자 및 제출자

○제안일자: 1992년 8월 12일

○제출자: 종로구청장(보건소)

2. 위원회 회부

○회부일자: 1992년 8월 19일

○상정일자: 1992년 9월 2일

[제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시민행정위원회]

3. 검토의견

○보건소법 개정(1991.3.8) 및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1991.10.10)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및 제3조의 법적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게만 해당되어 실질상 근거규정 없이 그동안 면제 운영되어 온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저소득층의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국가, 공공단체의 의료지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委員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委員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時16分)

○委員長 金成贊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

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區의 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市民行政委員會 金成贊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區에 가스계 신설로 증원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이와 병행해서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區에서는 지난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의 지시를 받아 계단위 조직 보강을 위하여 6월 30일 사무분장규칙과 정원규칙을 개정하였으며, 6월 말 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 즉 제18조에 가스계장은 화공기사, 기계기사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보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區에서는 향후 가스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취급에 안전성이 요구되므로 위험물 취급 전문가인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계장직에 포함으로 정원을 본청으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취급분야의 가스계장에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 관리기사 7급 상당과 8급 상당의 임용기준 자격을 별도로 분리하고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 상당의 가스계장 임용자격 기준 중 7급 상당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규정하게 된 것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1992.8. .

제 출 자: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 (별표 1)

나.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조정함. (별표 1)

3.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1992.6.30 개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4.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중 5. 위험
물 취급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험물 취급분야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고
가스계장	6급상당	가스행정 및 안 전관리	1.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서 당해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 7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 스행정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	
고압가스 관리기사	7급상당	"	1.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제, 화학, 취급기능사 1급으로서 당해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3. 8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 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인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	
	8급상당	"	1.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제, 화학, 취급기능사 1급 자격 증 소지자 2. 고압가스 기제, 화학, 취급기능 사 2급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 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인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 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 관리기사(7~8급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新・舊 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5. 위험물 취급분야				
5. 위험물 취급분야					5. 위험물 취급분야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무 내용	임 용 자 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무 내용	임 용 자 격	근거
		〈 신 설 〉			가 스 제 장	6 급 상당	가스행 정 및 안전관 리	1. 가스기술사 자격 증 소지사 2.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서 당해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 7급(상당)이상 공 무원으로서 가스 행정분야 5년 이 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	
고 압 가 스 관 리 기사	7급 8급 상당	고압 가스 안전 관리	○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 가스기사 2급 · 고압가스 기계 기능사 2급 · 고압가스 화학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고압가스안 전 관리법 시행 령 제11조 규정 에 적합한 자	고압 가스 안전 관리 법 시행 령 제 11조	고 압 가 스 관 리 기사	7급 상당	”	1.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 화학, 취급기 능사 1급으로서 당해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3.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가 스행정분야의 근 무경력 3년 이상 인 자로 고압가 스안전관리법 시 행령 제11조 규 정에 적합한 자	

現 行					改 正 (案)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무 내용	임 용 자 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무 내용	임 용 자 격	근거
						8급 상당	가스행 정 및 안전관 리	1.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 계, 화학, 취급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고압가스 기계, 화 학, 취급기능사 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 야 3년 이상 근무경 력자 3. 9급(상당)이상 공 무원으로서 가스행 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 에 적합한 자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朴雲植 專門委員 朴雲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사무분장규칙이 92년 6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산업과의 연료계 업무를 세분하여 가스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가스계를 신설하고 가스계장은 지방화공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복수 직렬을 두도록 했으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92년 7월 1일 개정하여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종로구 복수 직렬운영 정원을 6급 상당 별정직으로 지정승인하였으므로 별정직 가스계장의 임용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3조 승진 소요년수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7급에서 6급 승진에 3년 이상으로 규정되고 동 조례에 의한 타분야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은 7급 상당에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과 타분야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운식

1. 제안일자 및 제출자

- 제안일자: 1992년 8월 10일
- 제출자: 종로구청장(총무과)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1992년 8월 12일
- 상정일자: 1992년 9월 2일

[제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시민행정위원회]

3.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이 1992.6.30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과의 연료제업무를 세분하여 가스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가스계를 신설하고 가스계장은 지방화공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복수직렬을 두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종로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1992.7.1 개정하여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종로구 복수직렬 운영 정원을 6급 상당 별정직으로 지정 승인하였으므로, 별정직 가스계장의 임용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3조 승진 소요년수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7급에서 6급 승진시 3년 이상으로 규정되고, 동 조례에 의한 타분야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은 7급 상당에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과 타분야 별정직 임용자격기준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委員長 金成贊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洪承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이 92년도 7월 3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여쭙볼 것은 사무분장규칙이 條例案보다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이 90년 6월 30일 개정 시행으로 인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빼고서 그냥 산업과의 연료 관제로 인한 계가 증설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한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맞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總務局長 周和鍾 죄송합니다.

이것은 같은 성격을 갖고 할 때 우리 洪委員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와 규칙과의 상하 관계를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 안은 우리 區의 과 중 신설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이 있어야 합니다. 과가 본청과 또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가 신설되는데 그 밑에 제는 거기에 위임받은 사무분장규칙으로 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 條例, 지금 여기에서 여러 委員님들이 정해주는 것은 그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제를 만들었는데 그 제에 들어갈 제장의 자격요건을 조례에서 정한 겁니다. 별정직 6급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법의 상하 개념을 떠나서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저희들의 사무분장규칙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무분장규칙은 제를 만드는 거고 지금 여기서 委員님들이 정해 주시는 조례 개정 사항은 거기에 앓을 제장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상하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조례로 제를 신설한다 안 한다 이러한 동일개념이라면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분장규칙은 가스계를 신설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 대통령령에 의한 직제, 과 신설은 예를 들어 구에 과를 만드는 건 대통령령이어야 합니다. 그 영에서 위임한 우리 종로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제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쪽의 제장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洪承台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係를 만들면 係長을 임명하고 또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문구 상 아마 타당성만 있다면 마땅히 되는데 혹시 타당성이 없을 때 그냥 통과되면 체면이 안 서지 않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洪委員님이 아주 質疑를 잘 해주셨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그 외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玄壽漢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지금 임용자격하고 기준, 임용 자격에서 이해가 제대로 안 가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기술직 자격증이다 하면 일반 공무원보다는 대우가 더 좋아야 되는데 7級에서 6級 올라가려면 5年 이상, 이것이 하나의 條例로 통과된다고 하면 기술직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텐데 임용자격 기준을 어떻게 좀 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總務局長 周和鍾 서울特別市 각 區마다 이러한 기준을 똑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준칙이 本廳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아까 朴雲植 專門委員도 얘기하듯 일반직은 7級에서 6級 올라가는 데 3年인데 여기는 5年이라고 했기 때문에 형평이 안 맞는다 專門委員도 지적을 했는데 5年이라고 한 것은 本廳에서 내려온 가스계의 별정직 준칙에 5年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준칙에 따르기 위해서 5年이라고 한 것입니다. 7級の 근무 소요년수입니다.

○玄壽漢委員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6級職에 와서 公務員으로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분야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 공무원을 뽑는데 일간 신문에 한 35名 모집하는데 그중에 운전수가 27名인가 청소차 기사, 약 5대1의 실정이고 그런가 하면 전기 기계직은 겨우 또이또이거나 얼마 부족하게 왔는데 바로 玄委員님이 말씀하시듯 일반 사기업체 수요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玄壽漢委員 건축과나 이런 데 보면 좀 실력있다 뭐 있다 하면 전부 사표내고……

○總務局長 周和鍾 일반적으로 委員님들이 건축과의 기사들한테 얘기해 보면 우리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과에 얘기하면 건축과 직원들이 거의 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징계 먹으면 나가서 설계사무소 차리지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징계먹는 것을, 일반직은 승진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징계만 올라가면 여기저기 얘기하고 해서 징계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기술직 중의 특히 건축직은 징계 먹으면 먹지 않고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근태 조사해서 30分 늦다 해서 훈계, 주의 주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직을 시켜버려요. 바로 이같은 이유인데 행정수요보다 일반 사기업체 수요가 있을 때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玄壽漢委員 이 차제에 임용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난번 결산검사 때 봤지만 건축과의 직원들이 모자라니까 사회복지 같은 데서 설계도 제대로 못 하니까 불용처리가 계속 되고 사업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적기에 공사를 못하는 현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가스계는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회적으로 증설이 요구되는 마당인데 여기에서 완화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현실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가스계 제장이 관리직인데 대민 업무에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있다 해서 100% 주민의 수요에 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자격을 정할 때는 자격을 엄하게 해야 우리가 대민봉사에 있어서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써야지 다소 수요 공급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자격을 확확 내리면 너무 대민 행정에서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좀 엄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

영하다가 정 안될 때 議會에 다시 개정요구를 내서, 보니까 이러이러 해서 좀 자격을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玄壽漢委員 이 차제에 총무과에 영선제를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總務局長 周和鍾 그것을 저희들도 주장을 했더니 의도대로 안 되고 겨우 건축과에 관리제만 하나 생겼어요. 건축1, 2제하고 총무과의 영선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를 했는데 실제 係 설치는 건축관리제가 생겼습니다. 건축기사 또는 행정주사 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本廳에서 준직할 때도 시정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다른 데 국비와 지방비 및 다 대조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거기에 따라가 보고 운영하다 문제점이 나올 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運營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 가스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 참으로 1級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러한 느낌은 실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質疑하실 委員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總務局長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質疑가 없으면 質疑 終結을 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討論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討論이 없으면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表決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7時40分)

○委員長 金成贊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市民局長!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丁宰完 안녕하십니까?

市民局長 丁宰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방금 總務局長님께서 가스계 신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출납 공무원을 가스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成贊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會에 上程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區 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6月 30日 서울特別市鍾路區사무분장규칙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과의 연료계가 연료계와 가스계로 분리·신설되어 이에 대한 規定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改正하는 條例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條例 第5條 第2項의 대해서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原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과 함께 우리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1992. 7.

제 출 자: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1992.6.30) 공포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산업과에 가스계가 연료계로부터 분리 신

- 설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기금출납공무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함(안제5조제2항)
3. 관련근거:서울특별시종로구규칙 제120호(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생략) 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가스계장

○委員長 金成贊 丁宰完 市民局長! 수고했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朴雲植 專門委員 朴雲植입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사무분장규칙이 '92年 6月 30日 개정 공포되어 기존 산업과 연료계 업무 중 도시가스 관련 업무가 분리되어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同 條例 第5條 第2項의 改正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운식

1. 제안일자 및 제출자

○제안일자:1992년 7월 25일

○제 출 자:종로구청장(산업과)

2. 위원회 회부

○회부일자:1992년 7월 28일

○상정일자:1992년 9월 2일

[제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시민행정위원회]

3.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분장규칙이 1992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기존 산업과 연료계 업무 중 도시가스 관련업무가 분리되어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 제2항의 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委員長 金成贊 수고하셨습니다.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일문일답식으로委员님들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鄭命浩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命浩委員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기구설치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案 같습니다.

따라서 기구·설치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案件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原案 통과 동의발언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成贊 이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토론도 종결을 宣布합니다.

表決을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92鍾路區定數物品取得承認案(鍾路區廳長提出)

(17時45分)

○委員長 金成贊 議事日程 第5項 '92 鍾路區 定數物品 取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財務局長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劉元鍾 財務局長 劉元鍾입니다.

市民行政委員會 金成贊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92 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실과에서 구매 요청한 총 24개 품목 41점 예산 금액 6,715만4,000원에 대한 용도와 취득의 불가피성을 품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부착된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XP-11 레이저빔 1대는 區議會 常任委員會 신설로 인한 업무의 증가로 구입하는 것이며, XP-11 레이저빔 1대는 감사실 업무 증가로 인한 사무처리용 장비로 구입하며, 또한 도트매트릭스 1대는 종합토지세 전국 온라인화로 자료 입력을 위해 세무1과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총격식과 비총격식

프린터 각 2대는 수납업무 전산화와 구청 업무 전산화에 따른 장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터 286M 1대는 區議會 常任委員會 신설로 의안작성, 검토의견서 작성 등 전문위원실 전용으로 비치 사용코자 합니다. AT 286 2대는,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용 컴퓨터는 수정자료 입력 작업에 있어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므로 92年 종합토지세 전국 온라인화에 부합하기 위해서 추가 구입이 불가피하며, 다음의 AT 286 1대와 AT 286 2대는 지방세 체납을 전산입력 관리함으로써 매년 누적되는 체납자를 통계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모뎀 4800 BPS 1대와 모뎀 2400 BPS 14대는 내무부 주관 상황관리를 위한 전국 통신망 구축 관련 통신장비인 것입니다.

15대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뎀 4800 BPS 1대는 기획예산과에 비치, 기획예산 업무의 전산화 장비이며, 모뎀 2400 BPS 14대 중 인사행정 전산화를 위해 총무과에 2대를 비치하고, 호적업무 전산화를 위해 시민봉사실에 2대를, 인력동원 전산화를 위해 민방위과에 2대를, 사회복지업무 전산화를 위해 사회복지과에 2대, 내무부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하수과에 2대, 세무 체납자 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각각 2대씩 비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일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8mm 1대와 음향기기 120w 1대는.....

(○羅在岩委員 委員席에서 - 委員長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내용만 財務局長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2 종로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제출년월일:92.8.

제 출 자: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각종 행정장비 등 비소모품 정수관리 대상물품(255품목)의 취득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 취득(신규, 대체)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번 승인요청 내용 중 신규취득물품(20품목 36대)은 의회기구 증설로 원활한 회의진행 및 기록보존, 행정업무의 능률성·효율성 증대, 전국 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통신장비 등의 물품으로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대민행정의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또한 대체취득물품(4품목 5대)은 비품 내구년한이 지났거나 가까와 동사무소 주민등록 관리용으로 고장시 신속한 대체가 요구되며, 또한 기기의 노후화로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사용 불가능한 실정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체 구매코자 합니다.

2. 승인요청 근거

- 지방재정법 제95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정수물품 취득시 의회의 승인)

3. 승인요청 대상 품목:20품목 36대

○신규취득

- 1) 프린터 XP-11(레이저빔) 1대

- 2) 프린터 XP(레이저빔) 1대
- 3) 다기능사무기기마이터 286M 1대
- 4) 다기능사무기기 286 1대
- 5) PC(AT 286) 1대
- 6) PC(AT 386) 1대
- 7) 콤퓨터(AT286) 2대
- 8) 파쇄기 엔진(5.5HP, 40kg) 1대
- 9) 파쇄기(LH-12, 12kg) 1대
- 10) 절단기(12", 8.3kg) 1대
- 11) 심층다짐기 124, 1대
- 12) 비디오카메라 CS-E1(8mm) 1대
- 13) 음향기기 120W 1조
- 14) 모뎀 4800 BPS 1대
- 15) 모뎀 2400 BPS 14대
- 16) 프린터(도트매트릭스프린터) 1대
- 17) 비충격식 프린터 2대
- 18) 이동용절단기(K650, 9.8kg) 1대
- 19) 전자복사기(FT 4830 S) 1대
- 20) 충격식프린터 2대.

○대체취득(4품목, 5대)

- 1) 모뎀 2400 BPS, 2대
- 2) 자동매연측정기(DST-210) 1대
- 3) 컷터기(SWC-12, 120Kg) 1대
- 4) 소형승합(2209CC) 1대

4. 취득승인안

종로구청장이 1992.8. 승인요청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

1.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승 인 요 청			승 인			불 승 인		
	품목 (건)	수량	금액	품목 (건)	수량	금액	품목 (건)	수량	금액
계	24	41	67,154						
신규취득	20	36	52,160						
대체취득	4	5	14,994						

2. 신규취득

(단위:천원)

품목별	구분			현 황					승 인 요 청				승 인		불승인	
	정수	실수	부족	부서별	수량	단가	소요예산	취득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99	263	36		36		52,160									
프린터XP-11 (레이저빔)			1	구의회	1	3,000	3,000	상임위원회설치 로 업무의 증가								
프린터XT (레이저빔)	98	91	1	감사실	1	3,000	3,000	감사실업무증가								
프린터(도트매 트릭스)			1	세무1과	1	530	530	종합토지세전 국온라인화								
충격식프린터			2	세무2과	2	530	1,060	구청업무전산화								
비충격프린터			2	"	2	1,500	3,000	수납업무전산화								
다기능사무기 기마이터286M			1	구의회	1	870	870	상임위원회신설 로 업무 효율성								
다기능사무기기286	32	26	1	감사실	1	870	870	감사실업무증가								
컴퓨터 AT286 보조장치포함			1	세무1과	1	1,970	1,970	종합토지세전국 온라인화								
컴퓨터 AT386			1	세무2과	1	4,000	4,000	수납업무전산화								
" AT286			1	"	2	870	1,740	구청업무전산화								
모뎀4800BPS	15	0	1	기획 예산과	1	800	800	전국통신망구축 통신장비								
모뎀2400BPS			14	"	14	100	1,400	구청업무전산화								
비디오카메라 CS-E1(8mm)	5	4	1	구의회	1	1,000	1,000	상임위원회개최 시 기록보존								
음향기기120W	45	44	1	"	1	15,000	15,000	원활한회의진행								
파쇄기 엔진 (5.HP 40kg)	2	0	1	주택과	1	3,300	3,300	무허가건물철거 작업시 절단								
파쇄기 (LH-12, 12kg)			1	"	1	1,870	1,870	"								
절단기 (12" 8.3kg)	3	1	1	"	1	2,750	2,750	"								
이동용절단기 (K650, 9.8kg)			1	"	1	1,100	1,100	"								
전자복사기 (FT4830 S)	98	97	1	지역 교통과	1	2,900	2,900	자동차등록제 신설								
심층다짐기 (124.0)	1	0	1	토목과	1	2,000	2,000	도로보수 정 비작업								

3. 대체취득

(단위:천원)

구분 품목별	승 인 요 청							승 인		불승인	
	부서별	수량	구입 년한	내구 년한	단가	금액	물품상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 계		5				14,995					
모 델 2400 BPS	기 획 예 산 과	2			100	200					
자동매연측량기 (DSP-210)	환경과	1		9	6,395	6,395					
캣타기(SWC -120kg)	토목과	1		3	2,000	2,000					
소형승합 (2209CC)	보건소	1		7	6,400	6,400					

○委員長 金成贊 검토보고가 있겠습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洪承台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지금까지 정수물품을 보면 市
民行政委員會에서 다 통과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필요
없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成贊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별첨)

그런데 이 유인물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委員
들한테 낼 때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
지만 기분이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추경 때
사전 사업계획에 있어 추경에 예산 받은
거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라와
서.....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玄壽漢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課長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
는데 대체취득 품목이 나와 있는데 '91년도

에도 폐기된 것이 있고 대체취득한 것이
있는데 처분이 전혀 안 됐습니다. 다 어디
에 보관하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못 쓰게 된 것은 대체취득을 했지 않습니
까? 그러면 나머지는 고물로 팔거나 했어
야 되는데 91년도의 결산서에는 하나도 없
습니다.

○財務課長 鄭泰武 금년에 매각한 것은 내
년에 나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2년 동안 보관을 하
느나는 겁니다.

○財務課長 鄭泰武 금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숫자는 내년에 나옵니다.

○玄壽漢委員 2년 동안이면 상당히실텐데
자동차 같은 것은 어디에 보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차제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
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成贊 예, 洪承台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제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제의했습니다. 저의 제
의에 대해서 委員님들한테 찬성을 받으셔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贊 그러면 質疑를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중결을 宣布합니다.

토론도 중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중결을 宣布합니다.

表決을 하겠습니다.

鍾路區 定數物品 取得承認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이 끝났습니다. 本 委員會에서 審査 議決된 案件을 委員長과 幹事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第19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 보고하였으며 第1次 市民行政委員會는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55分 散會)

(참 조)

'92년 종로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검토보고서

종로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운식

1. 제안일자 및 제출자

○제안일자: 1992년 8월 27일

○제출자: 종로구청장(재무과)

2. 위원회 회부

○회부일자: 1992년 8월 28일

○상정일자: 1992년 9월 2일

[제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시민행정위원회]

3. 검토 의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승인 요청한 정수물품은 신규취득 20개 품목 36대, 대체취득 4개 품목 5대로 92년도 종로구 세입세출 본예산 및 92년도 제1회 종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장비의 현대화로 행정 능률을 제고시키고 대민행정에 신속·정확을 기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민봉사 체계를 확립코자 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겠으나, 대체취득 물품 중 기획예산과의 컴퓨터 단말기 모델은 내구년수가 4년이나 3년 사용하였고, 환경과의 자동차 매년측정기 또한 내구년수 9년이나 구입한 지 3년이 경과되는 등 내구년수 미도래 물품을 포함한 대체취득 승인요청 물품에 대한 보다 각별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짐.

○出席委員 9名

金 成 贊	羅 在 岩	千 相 旭
玄 壽 漢	李 萬 魯	芮 相 浩
洪 承 台	鄭 鍾 九	鄭 命 浩

○出席專門委員

朴 雲 植

○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周 和 鍾
財 務 局 長	劉 元 鍾
市 民 局 長	丁 宰 完
財 務 課 長	鄭 泰 武
保 健 行 政 課 長	閔 載 植
保 健 指 導 課 長	朴 相 殷

